



제397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공정거래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신설〉
■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355호)

2022. 5.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불공정거래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신설	3
※ 참고자료	12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기준	12
2. 제재수단 관련 해외제도 현황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은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1. 11.
3. 회 부 일 : 2022. 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자본 인수·합병 불공정거래로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3년간(2017~2019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형사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불공정거래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신설

-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7조의3(상습범) 상습으로 제443조, 제445조제22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중요정보 이용(제173조의2제2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 불법 공매도(제180조)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음.

[표 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재

유형	내용	제재
장내파생상품 관련 중요정보 이용 (§173의2)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 누설·이용 금지	§445(22의2)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미공개정보 이용(§174)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443①·② (기본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의 벌금 (가중) 부당이득액 5억원~50억원 → 3년 이상 유기징역 부당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시세조종 (§176)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부정거래 (§178)	풍문 유포, 중요정보 부실표시 등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	
불법 공매도 (§180)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규정 위반	§443① (형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의 벌금 §429의3① (과징금) 공매도 주문금액

- 최근 5년간(2017~2021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건을 살펴보면 총 264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미공개정보이용 119건(45.1%), 부정거래 81건(30.7%), 시세조종 64건(24.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¹⁾

[표 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재

위반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비율)
부정거래	14건	16건	16건	23건	12건	81건(30.7%)
시세조종	13건	12건	12건	15건	12건	64건(24.2%)
미공개정보이용	33건	32건	23건	15건	16건	119건(45.1%)
합 계	60건	60건	51건	53건	40건	264건(100.0%)

주1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건의 유형별 통계(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모두 포함)

주2 동일 사건에 복수의 불공정거래 유형 중복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순으로 통계산정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현재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해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를 의결한 자 중 과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또는 공시위반으로 최소 1회 이상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또는 과징금 이상의 제재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비율은 약 21.2%로 나타남.

1) 불공정거래행위의 사건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의심 사건을 심리하여 혐의사실을 이첩하거나, 민원·신고 및 자체인지를 통해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됨. 이후 자본시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검찰에 수사통보하거나 고발하는 단계로 이어지는데, 신속 수사가 필요한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없이 검찰로 바로 통보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3]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행위자 ¹⁾	전력자 ²⁾	행위자	전력자	행위자	전력자
미공개정보이용	42명	5명	30명	5명	36명	4명
시세조종	33명	7명	34명	7명	27명	12명
부정거래	35명	5명	34명	16명	36명	5명
합 계	110명	17명 (약 15.4%)	98명	28명 (약 28.5%)	99명	21명 (약 21.2%)

주1) 증선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를 의결한 자(법인·조합 포함)를 대상으로 집계(이후 기소 및 유죄판결 유무 무관, 증선위 고발·통보 의결 시점 기준)

주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또는 공시위반으로 최소 1회 이상 증선위의 고발·통보 또는 과징금 이상의 제재를 부과받은 자(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모두 포함)

주1 2개 이상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범한 경우 “부정거래 > 시세조종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순서로 집계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²⁾ 중 양형기준이 적용된 64건의 사건 중 실행 선고가 38명(59.4%), 집행유예 선고가 26명(40.6%)으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표 4] 2020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선고내역

구 분		선고내역		전체
		실행	집행유예	
제1유형 (1억원 미만)	수	26명	19명	45명
	비율	57.8%	42.2%	100.0%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수	2명	3명	5명
	비율	40.0%	60.0%	100.0%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수	3명	3명	6명
	비율	50.0%	50.0%	100.0%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수	7명	1명	8명
	비율	87.5%	12.5%	100.0%
전 체	수	38명	26명	64명
	비율	59.4%	40.6%	100.0%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0년 연간보고서』, 2021.12. p.506)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범죄가 해당됨.

□ 이에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됨.

○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며,³⁾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범행의 반복을 통해 높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갈수록 범행의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져 더 큰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임.⁴⁾

○ 현재 「형법」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⁶⁾ 및

3)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킨다.”

4)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바31 결정

“상습범은 반복된 범죄에 나타나 있는 일정한 ‘범죄에의 경향’이 문제되는 범죄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에 비하여 반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그만큼 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헌재 2015. 4. 30. 2013헌바103 참조). 즉, 상습범은 범행의 반복을 통해 높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갈수록 범행의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져 더 큰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다 정신질환이나 심신장애 등과는 달리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습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한바, 그 형의 가중이 과도하지 않는 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에서는 사기 또는 보험사기에 대하여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함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표 5] 사기·보험사기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정형 비교

구 분		사기	보험사기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시세 조종·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근거법		「형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본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or 이득액 3~5배 벌금	3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실형 선고 시 이득액 3~5배 벌금 필수 병과	※ 벌금 병과 可
가중 처벌	이득액 5~50억원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可	※실형 선고 시 이득액 3~5배 벌금 필수 병과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可	※실형 선고 시 이득액 3~5배 벌금 필수 병과		
상습범 가중		기본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

(자료: 금융위원회)

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상습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장내과생상품 관련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사기죄·보험사기죄보다 법정형이 중하며, 법원은 재범의 경우 양형시 가중사유로 고려하도록 양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습범 가중을 별도로 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⁸⁾⁹⁾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습범 가중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법정형은 해당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또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 형량 강화보다는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및 다양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경향이 있음.¹⁰⁾

[표 6]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해외 입법례

국가	형벌	상습범 가중
미국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최대 2,500만 달러) ※ 미국 증권거래법(SEA) Section 32(a)	규정 X

8) 금융위원회는 사기죄에 상습범 가중을 하더라도 1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어 불공정거래보다 법정형이 경(輕)하며, 형법 외 특별법상 규정된 금융·회계 관련 유사 범죄의 경우에도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외부감사법: 최대 무기징역형 및 이득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유사수신행위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공정거래법: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9) [참고자료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기준

10) [참고자료 2] 제재수단 관련 해외제도 현황

국가	형벌	상습범 가중
일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개인) 5년 이하 징역 or 500만엔(약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 7억엔(약 70억원) 이하 벌금 ※ 금융상품거래법 제179조의2, 제207조 ● 시세조종 행위 (개인) 10년 이하 징역 or 1,000만엔(약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 7억엔 이하 벌금 ※ 금융상품거래법 제197조, 제207조	규정 X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형사제재의 경우 형벌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통한 재범 방지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자본시장 신뢰의 빠른 회복과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을 적시에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¹¹⁾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2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¹²⁾
-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는 평균 393일이 소요되었고,¹³⁾ 전체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한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평균 40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¹⁴⁾ 결국 불공정거래행위의 검찰 통보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됨.

11) 2011~2016년 기준(남길남·천창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혐의 행위의 특징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8.12., pp.14~15.)

12) 박용진의원안(의안번호 제2104121호), 윤관석의원안(의안번호 제2103921호)

13) 남길남·천창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혐의 행위의 특징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8.12.

14) [형사공판사건의 확정시까지의 평균처리기간]

○ 셋째, 현행 「형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기본 법정 형에 대하여만 상습범 가중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443조, 제445조제22호의2의 죄”에서 정하는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어 제44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본형 외에도 제44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된 가중처벌에 다시 상습범 가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¹⁵⁾

구 분	제1심 확정		항소심 확정		상고심 확정	
	합 의	단 독	고 법	지 법	합 의	단 독
확 정 사 건 수	6,092	145,134	4,729	24,737	1,695	13,300
평 균 처 리 일 수	156.0	146.4	395.7	413.7	408.5	441.8

주 : 1. 확정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2020년 확정된 사건의 확정심급별 1심 접수일부터 최종 심급 종국일까지의 기간으로 심급별 선고일부터 상급심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포함됨
 2.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에서 접수 진행된 경우, 상고심 확정사건으로 봄
 3. 제1심 접수 피고인 중 병합심리결정, 소년부송치, 이송, 재정합의결정, 재배당 등으로 확정일자 없는 사건은 심급별 사건수에서 제외됨

(자료: 법원행정처, 『2021년 사법연감』, 2021.9. p.651.)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형량에 더해 다시 상습범 가중을 적용할 경우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될 수 있으며, 유사 법률에서도 기본 법정형에 대하여만 상습범 가중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습범의 가중처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7] 개정안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가중처벌

구 분			일반		상습범	
			징역	벌금	징역	벌금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기본형		1년~30년	이득액 3배~5배	1.5년~45년	이득액 4.5배~7.5배
	이득액	5~50억원 미만	3년~30년		4.5년~45년	
		50억원 이상	5년~무기징역		7.5년~무기징역	
불법 공매도			1년~30년	3배~5배	1.5년~45년	4.5배~7.5배
장내파생상품 중요정보 이용			3년 이하	1억원 이하	4.5년 이하	1.5억원 이하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8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참고자료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자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2.3.7.조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7/stock_01.jsp)

【참고자료 2】 제재수단 관련 해외제도 현황

구 분	해외제도 현황
자본시장 참여 제한	○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법원 결정 없이 행정부 독자로 결정) * 캐나다: 최대 영구, 홍콩: 최대 5년, 독일: 최대 2년간
금융거래제한	○ 미국 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산 전반에 대해서 처분·사용·이전을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cease & desist order)	○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 - 부당이득 환수, 상장회사 임원선임 및 취업제한 등 병과 가능 - 명령 위반시 건당 최대 10만달러의 제재금 부과
상장회사 임원선임제한	○ (일본)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위반한 자는 형 집행 종료 후 2년간 주식회사의 임원선임 제한 ○ (영국) 회사의 설립·운영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에 대해 법원이 5~10년 범위에서 회사의 임원선임제한 명령

(자료: 금융위원회)